

#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정이슈 보고서

## 2013-02 2013/03/22

###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농업·농촌 및 대기업의 경제 여건 비교
- III.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의 문제점
- IV. 결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3년 3월 22일(금)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농업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에서 발표된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조정실장의 주제발표문의 전문입니다.

※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070-7165-0015, [kwak121@chol.com](mailto: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들어가며

- 최근 정치권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본에 대한 규제·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농업계도 대기업(주)동부가 농업 생산 분야까지 산업을 진출함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생존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현장 농업인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농업계에서는 농업인과 농업 때문에 성장을 거듭해온 (주)동부팜한농의 계열사인 (주)동부팜화옹이 농업 생산 분야까지 진출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주)동부팜한농은 이번 사업은 농가와 상생하는 기업농 모델을 목표로 한 상호 상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주)동부팜한농은 수출 위주의 영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 영농 기술 및 시설보급, 공동 브랜드 구축 및 공동 수출 등 일반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이번 사업이 농업인과 상생 사업이었다면 사업 초기부터 농업인단체와의 소통 속에 사업이 전개됐어야 그 진정성을 믿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 허용 범위(규제를 할 경우 기업의 기준 및 범위 설정), ▲FTA 이행기금 지원의 적절성, ▲(주)동부팜화옹의 토마토 생산에 대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여 기업과 농업인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II. 농업·농촌 및 대기업의 경제 여건 비교<sup>1)</sup>

### 가. 농업·농촌 여건

#### 1) 농가 교역조건 추이

- 농촌 물가지수에 의한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에서 최근 상승 또는 정체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이는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농가판매가격지수의 상승폭이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폭을 웃돌기 때문임
- 201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대비 11.2% 상승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4.3%상승에 그쳐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대비 6.7% 개선되었음
- 2011년 농가교역조건을 품목별로 추계하면, 쌀은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3.8% 개선되었음
  - 청과물 가운데 마늘의 농가교역조건은 개선되었으나 양파, 토마토, 사과는 악화되었음
  - 축산물의 농가교역조건은 쇠고기는 전년대비 11.7% 악화, 돼지는 전년대비 31.3% 개선되었음.

#### 2) 농업경영비 추이

##### 2-1) 농업경영비 비중의 변화

-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 농업소득이 됨. 2003년 이전에는 농업소득이 농업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11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3.1%로 전년대비 10.8% 하락하였음

1) 출처 : KREI 2013년 농업 전망

- 최근의 농업경영비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상승과 고용 노임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경영이 일반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1970년에 농업경영비 비중이 50% 수준이었으나, 그 후 빠르게 상승하여 10년 후인 1980년에는 60.7%를 기록하였음. 1990년 이후에는 연평균 0.74%의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10년에는 73.2%를 기록하였음
  
- 한국과 일본의 농업경영비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농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1990-2010): 한국 3.73%, 일본 1.41%
  - 농업경영비 연평균 증가율(1990-2010): 한국 6.20%, 일본 2.02%
  
- 특히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연평균 2.81%증가한 데 비해 경영비는 6.76% 상승하였음(일본은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각각 연평균 2.68%, 3.29%). 이 결과 우리나라 농가 경제 수지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2-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비 동향

- 영농형태별로는 논벼, 축산, 과수 농가 순으로 농업경영비 비중이 증가하여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특히 축산 농가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으로 경영비 비중이 2011년에 75.1%까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3) 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 3-1) 농가소득원 동향

- WTO 체제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실질 농업총소득은 1994년을 정점으로 199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농가 수는 더 급격히 감소하여 호당 농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에 그쳤으며 2011년 호당 농업소득은 800만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농업소득 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증가로 호당 농가소득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부터 감소함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49%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은 5.16%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1.26% 증가하였음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1년 47.1%에서 2011년 29.0%로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1%에서 28.0%로 증가하였음

<표 1. 농가소득 동향>

단위 :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소득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농업소득	10,406	9,654	9,698	10,098	8,753
농업외소득	11,097	11,353	12,128	12,946	12,949
이전소득	4,959	5,289	5,481	5,610	5,453
비경상소득	5,506	4,227	3,507	3,467	2,993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3-2) 도·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8년 65.2%에서 2011년 59.1%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령별 농가소득은 40~49세 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2010년 104.4%, 2011년 89.5%, 50~59세 농가는 2010년 97.6%, 2011년 86.7%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0세 이상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2010년 43.4%, 2011년 40.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4) 농가부채 동향

- 농가 총부채는 최근 들어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8년 이후 농업용 부채는 감소, 개인 및 가계 부채는 증가 또는 정체하고 있기 때문임. 농가의 부채상환능력도 2008년 이후 농가자산이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가경제통계에서 조사한 호당 평균 부채는 2005년 27,210천 원에서 2007년 29,946천 원까지 증가하였음. 이후 2008년에는 25,786천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7,210천 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후 2011년 26,035천 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음
  - 호당 평균 부채를 전체 농가 수로 환산하면 총 부채액은 약 30조 원

으로 추산됨

<표2.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원, %

	2008	2009	2010	2011
농가부채(a)	25,786	26,268	27,210	26,035
농가자산(b)	341,227	358,029	372,476	387,180
부채상환능력 (a / b × 100)	7.6	7.3	7.3	6.7

주 :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자산×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지규모 0.5ha 미만의 영세농가와 7.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부채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지규모 0.5~7.0ha 미만 농가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경지규모 0.5~1.5ha 미만과 3.0~7.0ha의 농가부채는 2011년에 매우 감소하였으나, 1.5~2.0ha와 7.0ha를 초과하는 농가부채는 증가하였음

## 5) 농가구입가격 전망

- 2012년에는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되었으나 환율은 상승하였음. 그 결과 농가 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투입재 전체는 전년대비 5.0% 상승하였음
-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비료류·농약류 등의 가격지수 상승이 두드러졌음
  - 종자류 가격지수는 2011년에 전년대비 0.5%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비료류 가격지수는 2011년에 전년대비 16.0% 하락하였다가 2012년

- 에는 전년보다 18.5% 상승함
- 농약류 가격지수 역시 2011년에 전년대비 1.1% 하락하였다가 2012년에는 전년보다 18.6% 상승함
- 사료류 가격지수는 2010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2011년에 전년 대비 10.6% 상승한 183.9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186.3을 나타냄
- 영농광열과 영농자재 가격지수는 국제 유가의 안정세로 2012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1.4% 상승, 5.5% 하락한 144.4, 138.3으로 나타남

<표 3. 농가구입가격지수 전망(2005=100)>

	2011	2012 <sup>1)</sup>	2013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3/12	17/12	22/17
투입재 <sup>2)</sup>	157.8	165.7	163.6	172.5	186.9	-1.3	0.8	1.6
(경상재)	174.8	188.4	182.9	186.7	196.1	-2.9	-0.2	1.0
(농기구)	123.9	124.4	126.2	140.5	160.3	1.5	2.5	2.7
농업노임	138.0	143.6	147.0	155.9	165.9	2.4	1.7	1.2

주 1) 2012년은 1~3분기 평균임

2) 투입재는 경상재와 농기구의 가중평균이며, 경상재는 종자류, 비료류, 농약류, 영농광열, 영농 자재가격지수를 가중평균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6) 농가판매가격 전망

- 2012년 농산물 전체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3.4로, 전년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곡물은 쌀 가격의 상승으로 2.3%, 채소는 0.8%, 과실은 14.5% 상승하였고, 축산물은 2.1%로 하락함.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잦은 폭설 및 한파에 따른 공급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표 4. 농가판매가격지수 전망(2005=100)>

	2011	2012	2013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3/12	17/12	22/17
전체 농산물	120.2	123.4	118.1	116.4	118.9	-4.3	-1.2	0.4
곡물류	112.1	114.7	112.8	102.9	101.2	-1.6	-2.1	-0.3
채소류	150.6	151.7	141.6	147.3	156.8	-6.7	-0.6	1.3
과실류	102.0	116.8	98.7	91.9	90.4	-15.4	-4.7	-0.3
축산물	108.9	106.6	107.8	113.7	118.6	1.1	1.3	0.9

주 : 2012년은 1~3분기 평균임

자료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7)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2013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114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10년 후인 2022년에는 2012년보다 약 13만 호 감소한 102만 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7만 명(2.2%) 감소한 28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10년 후인 2022년에는 2012년보다 약 57만 명 감소한 23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43.5%에 이르러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17년 5.1%, 2022년 4.5%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 2013년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보다 약 3만 명(2.0%) 감소한 약 147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2012년보다 약 28만 명 감소한 122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나. 대기업 경제 여건(MB 정부 5년 기간 동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 기업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등 제조업 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였음
- 07년 4월에는 35개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11년 4월 현재 1,205 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 증가(증가율 48.4%)
  - 대기업집단별 평균 계열사 수도 07년 4월에는 23.2개였으나, 11년 4월에는 34.4개로 11.2개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07년 4월 672.3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89.1조원으로 76.9%인 516.8조원 증가
- 대기업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07년 4월에는 19.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1년 4월에는 34조원으로 14.8조원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07년 4월에는 690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53.8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7.2%인 463.8조원 증가
- 대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액도 19.7조원에서 33조원이나 증가

### Ⅲ.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의 문제점

#### 가.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 관련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

##### 1)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함

-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자는 것임. 실제,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에서 균형 경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광범위한 조정·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공포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상업영역을 보호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 등을 규제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음
-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외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중소 토마토 농가가 붕괴가 우려 됨. 특히 (주)동부팜한농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 회사로부터 (주)동부팜청과 등 도매법인까지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어 영세 농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함
- 이에 (주)동부팜한농 등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생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것이 상당수 농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

##### 2) 기업의 사회적 윤리·공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

- 농업인을 상대로 농자재 등을 판매하여 엄청난 성장을 해온 회사들은 농업인들에게 큰 부채를 가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농자재 회사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향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현장 농업인임

-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동부팜한농은 농업인들에게 비료, 농약 등 농자재 판매를 통해 성장해온 기업 임. 그런 회사가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순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윤리공헌 관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3)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상생을 강조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 됨

- 대기업의 농업 분야 생산 분야 진출에 대해 대기업들은 현장 농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에 토마토를 재배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주)동부팜한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출용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 및 노하우 보급, 마케팅 지원, 공동 브랜드 및 공동 수출 등을 통해 농가의 기술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만약, 농관련 업체들이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공헌·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비사업적·공익적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함
- 특히, (주)동부팜화농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농업인과 전혀 소통이 없이 이번 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장 농업인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상생 사업이라며 항변한다면 오히려 더욱 불신만 깊어지게 만들 것임

### 4)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에 진출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타 작목에 대한 연쇄 피해가 양산 됨

- 농업은 300만 농업인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축협 임직원, 농관련 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임

- 그러나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해당 작목에 대해 농가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업자가 양산되거나 타 작목으로 전작 할 수밖에 없음. 반면, 대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 또한, 현장 농가들의 타 작목으로 전작을 할 경우 특정 작목으로 전작을 많이 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 할 수밖에 없어 타 작목까지 연쇄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임

## 5) 식량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공익성이 강한 식량산업에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전개될 경우 식량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설립하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정부는 시장 경제 원칙을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공룡화되고 거래 교섭력이 커짐에 따라 골목상권 위협, 납품 업체 및 납품 농가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 남. 그런데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농업 생산분야까지 사업을 진출하여 특정 품목을 독점 생산 할 경우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여 식량 안보까지 위협 할 수 있음
- 실제, 정부가 휴대폰 통신비 및 대학등록금 인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기업이 독점으로 농산물을 생산 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직결 될 수밖에 없음

## 나. 미시적 관점으로 본 사례 조사(동부팜화옹을 중심으로)

### 1) FTA 이행 기금 투입의 적절성

#### ○ 현황

- 사업명 : 화성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
- 사업자 : (주)동부팜화옹 (동부 그룹 계열사)
- 사업규모 : 총 15ha (총사업비 569억원)
- 사업기간 : 2010년~2012년 (2012. 12. 28 완공)
- 2013년 1분기 중 토마토 5,000톤 생산 후 수출 계획
- 향후 새만금간척지(100ha 규모)에서 파프리카도 생산할 계획
- (주)동부팜새만금 사업자로 선정

#### <총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	인프라구축	온 실		서비스동 저온창고, 선별·기공장 집하장 등
		유리온실	육묘장	
467억원	15ha(45천평)	10ha	0.7ha	1.3ha
	87억원 (국비)	330억원(민자)		50억원(민자)

- \* 지열공사(100억, '11.9~'12.6) : 국비(60억), 경기도(6억), 화성시(14억), 자부담(20억)
- \* 지하수공사(2.8억, '11.9~11) : 화성시(1.6억), 자부담(1.2억)
- \* 임대조건 : 30년 장기임대(3년 갱신) 연간 임차료 65백만원(평당 1,444원)
- \* 출처 :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

#### ○ 문제점

- 농림수산식품부와 (주)동부팜화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 제5조에 근거하여 (주)동부팜화옹에 FTA지원기금 87억원을 지원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주)동부팜화옹은 FTA 이행 지원 기금을 직접 지원 받은 것은

아니고 FTA이행기금을 지원 받은 세실을 인수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해보면,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화용에 FTA 지원 기금을 사용한 것이 형식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정당하고 타당한 기금 사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우선, 동부팜화용은 2012년 3월경에야 화성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이번 사업을 준비한, (주)동부 그룹이라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화용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에 해당하기는 어려움
-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기금이 지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왜냐 하면 농산물 수출 효과가 농업인 소득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표상 국가 수출실적 증가와 대기업 수익으로만 귀속되기 때문임

## 2)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 공사 자부담과 관련

- 자부담금 380억원은 유리온실, 집하장 등에 투입되었으며, 지반 강화·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FTA기금 87억원이 투입되었음
  - 2012년 농식품부 국감자료에는 인프라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
- 이외에도 지열냉난방공사비용 1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8)에서의 국비보조 6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20% 비율과 같이 국비 6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 등 8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출처 : '12년 농식품부 국감자료)
  - 일반 농가는 지열공사에 ha당 7억원 가량이 소요되어 국비·지방비 보조를 받더라도 자금 투자 규모가 커서 쉽게 설치하기 어려움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나 45천평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연간 65백만원으로 평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1,444 원에 불과함

### 3) 국내 농가의 일본 수출 토마토의 90~95%는 방울토마토로 일반(대과) 토마토와 경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토마토 수출시 HS코드 상 방울토마토와 일반(대과)토마토의 구분 없이 같은 코드로 수출되어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무역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수출 일반(대과)토마토 비율은 11.4%(190톤)로 파악됨
- 그러나 일본재무성 수입통계에 따르면 신선토마토 수입량은 최근 3개년(2010년~2012년) 평균 4,123톤으로 (주)동부팜화용 연간 최저 생산량 추정치 2만톤의 20%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의 국별 3개년 평균 수입비율 : 미국 42%, 한국 40%
  - 일본 역시 수입통계 상 방울토마토와 일반토마토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뺀 일반토마토 수입량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됨. (일본이 방울토마토를 한국에서만 수입한다고 하였을 때 한국산 일반토마토 수입량은 1,500톤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주)동부팜화용 생산량의 8% 수준에 불과함)

#### <최근 3개년 국산 신선 토마토 수출현황>

(단위 : 톤)

연도	총수출량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2010년	1,072톤	1,034(96%)	-	30(6%)	5(0.5%)
2011년	1,659톤	1,625(98%)	0.5(0.03%)	16(1%)	11(0.7%)
2012년	2,437톤	2,323(95%)	101(4%)	9(0.4%)	2(0.1%)
평균	1,722톤	1,661(96%)	34(2%)	18(1%)	6(0.3%)

출처 : 농협중앙회

- 생과용 일반토마토 수출시장이 95% 이상 일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동남아 등지로 수출시장 확대가 어렵고 수출이 어려울 경우 내수시장 유입이 심각하게 우려됨
- 토마토 수출은 사전에 바이어 발굴을 통한 시장 개척이 정식기 이전에 이루어져 바이어 요구 사양대로 생산, 포장, 수출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동부팜화옹 생산 일정 상 이미 해외수출 대상업체와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수확 이후 수입업체를 접촉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동부팜화옹은 이미 연초에 정식하여 1분기 내에 5,000톤을 수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해외 수입업체와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일본 도매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나, 일본 도매시장도 정가수의매매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량으로 상장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함께 한국산 토마토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차후 (주)동부팜화옹은 물론 일반농가의 수출채산성 악화로 지속적인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4) 품종이 내수시장용 핑크계 완숙 토마토가 아니라 유럽계 업소용 레드 토마토로 국내 농가와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최근 우리 농가도 유럽계 품종 재배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특히 춘천·부여·논산지역은 유럽계 레드품종(데프니스 등)재배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유럽계 품종재배를 늘리는 이유는 양액재배를 통해 기형과 비율을 줄여 상품성을 높이고, 최근 외식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식자재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임
- 2012년 (주)동부팜한농은 일본 수출용 유럽계 물량이 부족하여 춘천신북농협에 요청하여 유럽계 데프니스품종 토마토를 29톤(8월~10월) 공급받아 수출하였음
-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계, 유럽계를 구분할 줄 몰라 똑같이 받아들이는 형편이고 이는 유통업자도 마찬가지임
- 동부팜화옹은 핑크계니 유럽계 레드토마토니 할 것이 아니고 정식에 들어간 정확한 품종명을 공개해야 할 것임

5) 수출시장 개척으로 일반 농가들과 공유 상생하며, 공동브랜드, 공동수출 등 농가 기술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 농가와의 상생과 기여를 말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일반 토마토농가와 어떻게 연계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주)동부팜화옹은 뉴질랜드 제스프리, 미국 썬키스트, 덴마크 데니쉬브라운 등을 사례로 들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례로 들은 해당기업은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하고 해당 협동조합은 품질관리, 상품화, 공동브랜드관리 등을 통해 공동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수익을 농가로 환원하는 형태임
- (주)동부팜화옹은 농가와 계약재배 등의 상생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하고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대기업만의 독자사업으로 파악됨

## IV. 결론

### 가. (주)동부팜화옹의 생산 토마토 수출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수출 및 가공처리 미이행시 정부 제재 철저한 이행

- 수출 및 가공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임대차 해지(정부제재내용)는 물론 대주주인 김준기 (주)동부그룹 회장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함
- 국내 내수시장 유입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주요 수출시장 및 거래선 확인(기존 수출농가와의 경합 여부)

### 나.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도적으로 차단·축소하거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업 부문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을 하여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한·축소하거나 상생 방안을 마련 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선정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사업을 철수·축소하거나,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이번 사업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선정하여 (주)동부팜한농이 사업을 철수·축소하거나 현장 농가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sup>2)</sup> 사례 참조(동 법률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sup>3)</sup>의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동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심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

### 다.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기업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에 정부 지원 자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 함 (절차 => 중소기업 협·단체에서 신청 => 신청 대상 대기업과 협의 =>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 결론)

3)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업종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종업원수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1안) 대기업이 소유한 회사 법인에 정부 지원 자금 지원을 제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현 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제외한다.</p>

4) 2013년 2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수는 62곳으로 소속 회사 수는 1,774개 임

2안) 기업체의 농업 생산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

□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있어서 대기업 집단은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함

현 행	개정안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은 제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 고려사항 1(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대응) : 이처럼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농업계이지만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함

※ 고려사항 2(규제 대상 기업의 기준 및 범위) : 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개정안에는 제한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현재는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하였음

다만, 농업 생산 진출 제한에 대기업집단만 규정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적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견기업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과정의 논의를 거쳐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규제 대상은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